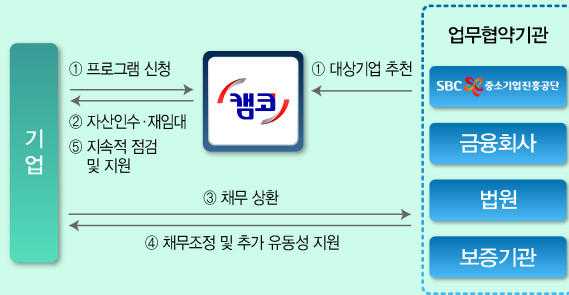


프로그램 구조



진행절차



신청방법

온라인 접수

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홈페이지
'온기업'(www.oncorp.or.kr) 방문 후 회원가입
*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

캠코의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

[투자 매칭 지원]



[기업지원 프로그램]

캠코

- ✓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
- ✓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
- ✓ 캠코선박펀드

관계기관

- ✓ 자금지원, 보증제도 등 종합 안내
- ✓ 기업컨설팅 제도 안내

문의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
1588-3570(내선번호4)

M·E·M·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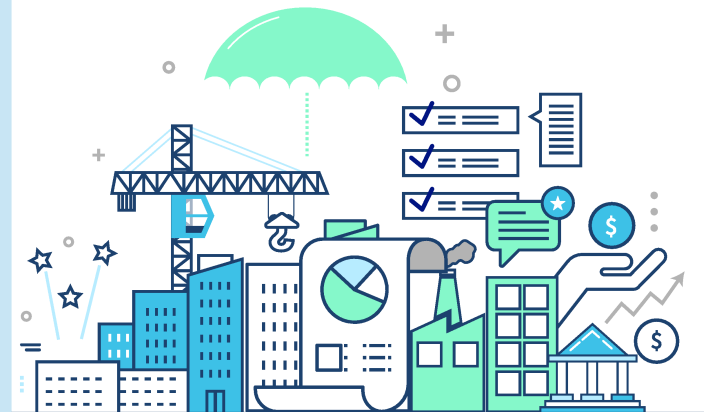
www.kamco.or.kr

기업의 신속한
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

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



Sale & Lease-back Program



↑ 개요

기업의 자산을 캬코가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

📁 대상기업

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
※ 고용효과와 전·후방산업 효과가 큰 산업(제조업 등) 우선 고려

🏢 매입대상 자산

법인소유의 사옥, 공장 등으로서 관련 법령상 매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

👤 매매대금 산정

감정평가금액과 회계법인 가치평가금액(주변 낙찰사례, 임대료 시세 고려)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
※ 매매대금은 인수자산 관련 담보차입금 상황에 우선적으로 사용

🏠 임대료 및 임대기간

임대료는 캬코 조달금리와 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, 임대기간은 5년

👤 우선매수권 부여

기업은 매각 3년 후부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재매입 가능 단,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임대종료 시 재매입 가능
(※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는 임대종료 3개월 전까지 통보)

📈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의 장점

- 01 사업기반 유지**
기업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재임차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02 기업가치 상승**
매각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,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신용도를 제고하는 등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.
- 03 저렴한 임대료**
캬코의 공사채 조달금리와 관리비용 등을 반영한 임대료는 시중 대비 저렴합니다.
- 04 협약기관 연계지원**
캬코와 협약기관이 연계한 사후지원(신규자금 지원, 상환유예, 경영컨설팅 등)을 통해 보다 빠른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.
- 05 우선매수권 행사**
기업은 자산매각 3년 이후부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습니다.

| 프로그램 우수사례 |

법정관리 '눈물' 中企 창업주...5년만에 '미소' 머니투데이 2017.1.9자 보도자료

...(중략)...한국자산관리공사도 구원투수로 나섰다. 정 대표의 열정과 회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세일앤리스백(자산매입 후 재임대) 방식으로 ○○○○○ 본사를 사들였다. 덕분에 ○○○○○에는 현금 183억원이 유입됐다. 이 자금을 활용해 제품군 및 공급처 확대에 나선 결과...(중략)... 등을 새로운 거래처로 확보할 수 있었다.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5개월여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. 지난해 실적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전년대비 30% 이상 성장과 함께 이익을 낼 것이 확실시된다.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며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...(중략)...

FAQ

- Q** 신청하면 실제 지원이 실행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A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,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Q** 시세와 비교했을 때 매각금액은 어느 수준인가요?
A 시장 거래금액 대비 매각금액 비율을 일률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우며, 개별 건마다 다릅니다.
- Q** 매입제한 자산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?
A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부동산(군사보호지역 등) 및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매입이 불가합니다.
- Q** 산업단지 내 소재 기업도 인수대상에 포함되나요?
A 2016.12.2자로 산업집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소재 기업도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- Q** 인수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?
A 해당 자산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며 공장의 경우 기계 및 기구는 제외됩니다.
- Q** 우선매수권 가능시점, 가격, 기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A 우선매수권은 자산매각 3년 이후부터 임대종료 3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하며, 가격은 캬코에 매각할 때와 동일한 방법(감정평가 및 가치평가)으로 산정합니다. (최저가격 : 캬코 인수금액)